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종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1090 발 의 년 월 일:2023년 08월 14일 자: 김종길, 강석주, 곽향기, 발 의 구미경, 김경훈, 김규남, 김동욱, 김성준, 김영철, 김용일. 김용호. 김원중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민병주 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 박화희, 서상열, 송경택, 신복자, 옥재은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종복, 이병윤, 이봉준, 이상욱, 이성배, 이종태, 이종환, 임규호, 임춘대,

장태용, 정지웅, 최민규, 최진혁, 최호정, 허 훈, 홍국표. 황유정. 황철규

의원(51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는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 따라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세 10%, 담배소비세 45%, 지방교육세 100%를 의무적으로 전출하고 있으며, 「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 제 5조에 따라 보통세의 0.6% 이내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
- 그러나 서울특별시 재정의 경우 부동산 침체 등에 따라 세입 증가폭은 문화하고 있는 반면, 고령화 저출생에 따른 복지비 급증 등 경직성 경비는 확대되고 있어 재정 여력이 감소하는 추세임

○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지출요인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서울시 교육경비보조금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전전 연도 결산 기준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(순세계잉여금 포함)가 0원보다 큰 경우에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도록 하여 서울특별시 재정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재정간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수입을 융통성 있게 운용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교육경비 보조의 제한 사항에 전전 연도 결산 기준 교육청의 통합재 정수지(순세계잉여금 포함)가 0원보다 큰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도록 함(안 제6조의2제3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

다. 기타: 없음

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전전 연도 결산 기준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(순세계잉여금 포함)가 0원보다 큰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2(교육경비 보조의 제한)	제6조의2(교육경비 보조의 제한)
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	
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.	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전전 연도 결산 기준 교육청
	의 통합재정수지(순세계잉여
	금 포함)가 0원보다 큰 경우